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

## 제 권 판 결

사 건 2007카공 37 공시최고

신청인 정은영(750921-\*\*\*\*\*)

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149-3 이노자인

판결선고 2007. 7. 30.

### 주 문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의 무효를 선고한다.

### 이 유

아래 목록 기재 증서에 대하여 2007. 4. 23. 공시최고를 하였는바, 그 공시최고에서 정한 2007. 7. 30. 14:00 까지 권리의 신고나 청구 및 증서를 제출한 자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7년 8월 7일

판사 김 동 국